숙박업 운영 핵심 비결,

실제 전문가에게 듣다

숙박업 절세 방안



숙박업 절세 방안

(1)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 종류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숙박업의 종류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다.

품질인증 대상업종		법령	특징
숙박업	일반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취사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2) 숙박업 종류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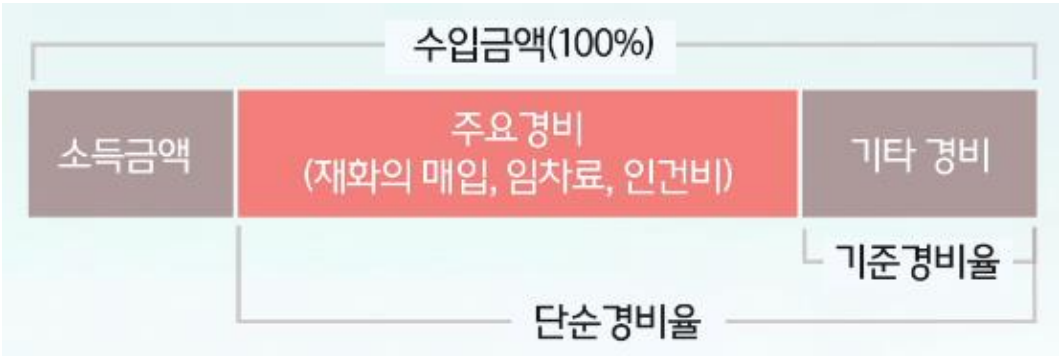
숙박업은 관련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고, 수령한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세정관리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반으로 세분화한 업종코드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 시 업태, 업종에 따라 업종코드를 부여한다. 이때 부여 받은 업종 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져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품질인증 대상업종	법령	단순경비율 (연 매출 36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연 매출 3600만원 이상)
일반숙박업	호텔업(551001) ~ 여관업(551006)	82.9~87.1	18.4~26.1
생활숙박업	숙박공유업(551007)	84.6	17.3
한옥체험업	민박업(551005)	82.9	19.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민박업(551005)	82.9	19.7

숙박업 절세 방안

(2) 숙박업 종류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매출 올린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일괄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연 매출 3천 6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3)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

법인은 1년에 4회(분기별), 개인은 1년에 2회(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세기간은 반기로 구분되며 연간 1기, 2기로 구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에서 예정고지하여 납부서를 발송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하고 공제액을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세금을 환급 받는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연 1회 납부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의 다음해 3월 말일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말일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해 6월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장의 토지, 건물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숙박업 절세 방안

(4) 숙박업의 절세방법

1. 신규 설비투자가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적지만 초기 투자한 인테리어와 설비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고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0.5%만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가 나오면 이를 0으로 본다(일반과세자와 같이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으며,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과세표준*10%)-매입세액(매입가액*10%)	환급가능
간이과세자	매출세액(공급대가*10%*25%) - 공제세액	환급불가능

2. 시설투자 전 사업자 등록 및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 발급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초기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발급받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인테리어를 할 때 현금결제하면 비용을 할인 해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거래를 하고 증빙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비용인정)가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고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숙박업 절세 방안

(4) 숙박업의 절세방법

3. 인건비 신고

숙박업은 카운터 및 객실 청소를 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납부이력이 있어야 사업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4. 대출이자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투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작성한 대출계약서와 연간 이자비용 지급내용을 담당 세무사에게 보내면 이자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5. 수리비, 소모품비 관리

객실 또는 건물의 수리비와 소모품비를 구매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모품 등을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되므로 자주 있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최대한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해야 한다.

6. 홍보비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투어, 아고다, 마이리얼트립 등 각종 숙박앱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이므로 회사의 비용에 포함된다.

7. 현금영수증 발급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인 숙박업, 숙박공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현금매출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5) 숙박업에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숙박업에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용, 소모품비, 시설유지비, 광고비, 금융비용 등이 있다.

인건비

직원의 급료,
급여, 보험료 등

운영비용

전기, 수도,
가스,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 음료, 세면용품,
1회용품 등

시설유지비

건물 및 냉난방시설
유지비, 욕조 및 침구 등
수선비, 토지 및 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광고비

광고, 홍보,
마케팅 관련비용

금융비용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